

판 결

사 건
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), 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

피 고 인

검 사

변 호 인

변호사 조효동(국선)

판 결 선 고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파고인에게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간

취업제한을 명한다.